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7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4월 27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수상계류장이 육상계류장보다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높으므로, 이를 반영하고자 수상 계류장의 이용료 범위 중 최소 요금을 상향 조정하여 요금의 차이를 두
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수상계류장의 일간 및 월간 이용료 범위 중 최소 요금을 상향 조정함
(안 별표2 제1호의 표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2 제1호의 서울수상레포츠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	기 준 및 이 용 료			비 고	
서울 수상레포츠 센터	수상계류장	일간이용료		월간이용료	1.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, 해당 이용료를 공고한다. 2.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(2시간 이내) 기준이며, 교육 프로그램(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)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. 3. 경사면(슬립웨이) 이용료는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. 다만,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(슬립웨이) 이용료는 면제한다. 4.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.	
		7,000~35,000원		131,000~460,000원		
	육상계류장	일간이용료		월간이용료		
		6,000~18,000원		119,000~302,000원		
	장비보관함	1일	4,000~10,000원			
		1개월	50,000~110,000원			
		1년	280,000~420,000원			
	수상레포츠 프로그램	어린이 (6~12세)	청소년 (13~18세)	성인 (19세 이상)		
	체험	무동력	8,000~30,000원	10,000~36,000원		10,000~48,000원
		동력	20,000~50,000원			
교육	무동력	40,000~100,000원				
경사면 (슬립웨이)	1일	6,000~20,000원				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비 고
			<p>5.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가.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</p> <p>나.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</p> <p>다. 각종 행사(국제대회, 축제, 공연 등)가 개최되는 경우</p> <p>라.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</p>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</p> <p><u>공원이용시설(제3조제3호 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85%;">공원시설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수상 이용시설</td> <td>가. 선박(보트, 요트, 돛단배, 동력보트, 한강르네상스호,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, 기타 선박), 선박계류장, 선착장, 요트마리나, 수상콜택시 승강장</td> </tr> <tr> <td>나. 여의도 물빛무대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다.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공원시설물	1. 수상 이용시설	가. 선박(보트, 요트, 돛단배, 동력보트, 한강르네상스호,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, 기타 선박), 선박계류장, 선착장, 요트마리나, 수상콜택시 승강장	나. 여의도 물빛무대		다.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		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	<p>[별표 1]</p> <p><u>공원이용시설(제3조제3호 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85%;">공원시설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수상 이용시설</td> <td>가. 선박(보트, 요트, 돛단배, 동력보트, 한강르네상스호,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, 그 밖의 선박), 선박계류장, 선착장, 요트마리나, 수상콜택시 승강장</td> </tr> <tr> <td>나. 여의도 물빛무대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다. 서울수상레포츨센터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라.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공원시설물	1. 수상 이용시설	가. 선박(보트, 요트, 돛단배, 동력보트, 한강르네상스호,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, 그 밖의 선박), 선박계류장, 선착장, 요트마리나, 수상콜택시 승강장	나. 여의도 물빛무대		다. 서울수상레포츨센터		라.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		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	<p>[별표 1] (개정안과 같음)</p>								
구 분	공원시설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수상 이용시설	가. 선박(보트, 요트, 돛단배, 동력보트, 한강르네상스호,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, 기타 선박), 선박계류장, 선착장, 요트마리나, 수상콜택시 승강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나. 여의도 물빛무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.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공원시설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수상 이용시설	가. 선박(보트, 요트, 돛단배, 동력보트, 한강르네상스호,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, 그 밖의 선박), 선박계류장, 선착장, 요트마리나, 수상콜택시 승강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나. 여의도 물빛무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. 서울수상레포츨센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라.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</p> <p><u>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</u></p> <p>1. 수상이용시설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기 준 및 이 용 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강 르네상스호 (생략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강 아라호 (생략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그 밖의 선박 (생략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의도 물빛무대 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선박	한강 르네상스호 (생략)	한강 아라호 (생략)	그 밖의 선박 (생략)		여의도 물빛무대 (생략)	<p>[별표 2]</p> <p><u>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</u></p> <p>1. 수상이용시설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기 준 및 이 용 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강 르네상스호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강 아라호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그 밖의 선박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의도 물빛무대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선박	한강 르네상스호 (현행과 같음)	한강 아라호 (현행과 같음)	그 밖의 선박 (현행과 같음)		여의도 물빛무대 (현행과 같음)	서울	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	<p>[별표 2]</p> <p><u>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</u></p> <p>1. 수상이용시설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기 준 및 이 용 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강 르네상스호 (개정안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강 아라호 (개정안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그 밖의 선박 (개정안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여의도 물빛무대 (개정안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선박	한강 르네상스호 (개정안과 같음)	한강 아라호 (개정안과 같음)	그 밖의 선박 (개정안과 같음)		여의도 물빛무대 (개정안과 같음)	서울	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선박	한강 르네상스호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한강 아라호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그 밖의 선박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여의도 물빛무대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선박	한강 르네상스호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한강 아라호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그 밖의 선박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여의도 물빛무대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	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선박	한강 르네상스호 (개정안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한강 아라호 (개정안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그 밖의 선박 (개정안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여의도 물빛무대 (개정안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	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
(신설)	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
		6,000 ~35,000원	119,000 ~460,000원	
육상계류장		일간이용료	월간이용료	
		6,000 ~18,000원	119,000 ~302,000원	
장비보관함	1일	4,000~10,000원		
	1개월	50,000~110,000원		
	1년	280,000~420,000원		
프로그램	어린이 (6세~12세)	청소년 (13세~18세)	성인 (19세 이상)	
	체험	무동력 8,000 ~30,000 원	10,000 ~36,000 원	10,000 ~48,000원
		동력	20,000~50,000원	
교육	무동력	40,000~100,000원		
경사면 (슬립웨이)	1일	6,000~20,000원		
비고	<p>1.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, 해당 이용료를 공고한다.</p> <p>2.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(2시간 이내) 기준이며, 교육 프로그램(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)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.</p>			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
		7,000 ~35,000원	131,000 ~460,000원	
육상계류장		일간이용료	월간이용료	
		(개정안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	
장비보관함	1일	(개정안과 같음)		
	1개월	(개정안과 같음)		
	1년	(개정안과 같음)		
프로그램	어린이 (6세~12세)	청소년 (13세~18세)	성인 (19세 이상)	
	체험	무동력 과 같음)	(개정안 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		동력	(개정안과 같음)	
교육	무동력	(개정안과 같음)		
경사면 (슬립웨이)	1일	(개정안과 같음)		
비고	(개정안과 같음)			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
	<p>3. 경사면(슬립웨이) 이용료는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. 다만,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(슬립웨이) 이용료는 면제한다.</p> <p>4.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.</p> <p>5.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가.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</p> <p>나.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</p> <p>다. 각종 행사(국제대회, 축제, 공연 등)가 개최되는 경우</p> <p>라.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</p>
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공원시설물
1. 수상이용시설	가. 선박(보트, 요트, 돛단배, 동력보트, 한강르네상스호,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, 그 밖의 선박), 선박계류장, 선착장, 요트마리나,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. 여의도 물빛무대 다.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.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

별표 2 제1호의 표 중 여의도물빛무대란 아래에 서울수상레포츠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	기 준 및 이 용 료		비 고
서울 수상레포츠 센터	수상계류장	일간이용료	월간이용료	1.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, 해당 이용료를 공
		7,000~35,000원	131,000~460,000원	
	육상계류장	일간이용료	월간이용료	
		6,000~18,000원	119,000~302,000원	

구 분		기 준 및 이 용 료			비 고	
	장비보관함	1일	4,000~10,000원		고한다. 2.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(2시간 이내) 기준이며, 교육 프로그램(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)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.	
		1개월	50,000~110,000원			
		1년	280,000~420,000원			
	수상레포츠 프로그램		어린이 (6~12세)	청소년 (13~18세)	성인 (19세 이상)	3. 경사면(슬립웨이) 이용료는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. 다만,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(슬립웨이) 이용료는 면제한다. 4.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. 5.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가.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.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. 각종 행사(국제대회, 축제, 공연 등)가 개최되는 경우 라.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	체험	무동력	8,000~30,000원	10,000~36,000원	10,000~48,000원	
		동력	20,000~50,000원			
	교육	무동력	40,000~100,000원			
경사면 (슬립웨이)		1일	6,000~20,000원		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			
<p>[별표 1]</p> <p>공원이용시설(제3조제3호 관련)</p>		<p>[별표 1]</p> <p>공원이용시설(제3조제3호 관련)</p>				
구 분	공원시설물	구 분	공원시설물			
1. 수상 이용시설	<p>가. 선박(보트, 요트, 돛단배, 동력보트, 한강르네상스호,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, 기타 선박), 선박계류장, 선착장, 요트마리나, 수상콜택시 승강장</p> <p>나. 여의도 물빛무대</p> <p>다.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</p> <p>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</p>	1. 수상 이용시설	<p>가. 선박(보트, 요트, 돛단배, 동력보트, 한강르네상스호,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, 그 밖의 선박), 선박계류장, 선착장, 요트마리나, 수상콜택시 승강장</p> <p>나. 여의도 물빛무대</p> <p>다. 서울수상레포츨센터</p> <p>라.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</p> <p>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</p>			
<p>[별표 2]</p> <p>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</p>		<p>[별표 2]</p> <p>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</p>				
1. 수상이용시설		1. 수상이용시설				
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구 분	기 준 및 이 용 료			
선박	한강르네상스호 (생략)	선박	한강르네상스호 (현행과 같음)			
	한강아라호 (생략)		한강아라호 (현행과 같음)			
	그 밖의 선박 (생략)		그 밖의 선박 (현행과 같음)			
여의도 물빛무대	(생략)	여의도 물빛무대	(현행과 같음)			
(신설)		서울수상레포츨센터	수상계류장	일간이용료 7,000 ~35,000원	월간이용료 131,000 ~460,000원	
			육상계류장	일간이용료 6,000 ~18,000원	월간이용료 119,000 ~302,000원	
			장비보관함	1일	4,000~10,000원	
				1개월	50,000~110,000원	
				1년	280,000~420,000원	

구 분		기 준 및 이 용 료		
	프로그램	어린이 (6세~12세)	청소년 (13세~18세)	성인 (19세 이상)
체 험	무동력	8,000 ~30,000원	10,000 ~36,000원	10,000 ~48,000원
	동력	20,000~50,000원		
교 육	무동력	40,000~100,000원		
	경사면 (슬립웨이)	1일	6,000~20,000원	
	비고	<p>1.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, 해당 이용료를 공고한다.</p> <p>2.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(2시간 이내) 기준이며, 교육 프로그램(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)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.</p> <p>3. 경사면(슬립웨이) 이용료는 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. 다만,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(슬립웨이) 이용료는 면제한다.</p> <p>4.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.</p> <p>5.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가.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</p> <p>나.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</p> <p>다. 각종 행사(국제대회, 축제, 공연 등)가 개최되는 경우</p> <p>라.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</p>		

구 분		기 준 및 이 용 료